



의령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보

제891호 2024. 3. 27.(수)

선 람	기관의 장

고시

- 의령군 고시 제2024-59호
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(2차) 고시 2
- 의령군 고시 제2024-63호 도로명주소 고시 3

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(2차) 고시

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라 『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』 시행계획 변경(2차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21일

의령군수

1. 사업명: 중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2. 사업목적: 농촌의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안전·위생 등 필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
3. 사업위치: 의령군 대의면 중촌리 중촌마을 일원
4. 사업비
 - 당 초: 1,965백만원(국비1,369 도비146 군비344 자부담106)
 - 변경: 1,923백만원(국비1,369 도비146 군비344 자부담64)
5. 주요사업내용
 - 주택정비: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, 빈집철거, 노후 집수리
 - 생활·안전·위생인프라: 가드레일 설치, 횡단보도 보안등 설치, 마을방범 CCTV 설치, 재래식화장실 개량, 배수관로 정비, 마을안길 정비
 - 주민공동시설: 마을회관 신축
 - 생활경관개선: 마을담장 정비, 빈집철거 공원조성
 -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: 교육돌봄 프로그램, 문화체육프로그램, 리더 및 주민교육 등
6. 사업시행자: 의령군수(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)
7. 사업시행기간: 2020년 ~ 2024년(5년간)

※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 농촌전략담당관 농촌시설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☎055-570-2782)

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4 - 63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27일

의령군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: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4길 10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일
별 지 참조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(☎055-570-2440)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

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 로 명 부여사유
1	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행정리 361-3	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4길 10	2024-03-27	모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